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5118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2나20089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합511831 판결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낙환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906,601원과 그 중 370,080,030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1. 7. 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9.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362,667,5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362,667,5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9. 3.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기재 부분은 생략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보증금액 408,000,000원(이후

391,000,000원, 374,000,000원으로 순차 변경), 보증기한 2019. 8. 23.(이후 2020. 8. 22., 2021. 8. 20.로 순차 변경)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E에게 2020. 9. 19. 만기가 도래한 265,430,000원의 대출금채무, 2020. 9. 28. 만기가 도래한 50,9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2. 1. E에게 370,080,0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857,120원을 지출한 후 그 중 30,539원을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매매계약

1) 피고 B은 2020. 4. 29.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0. 5. 6. 접수 제18367호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20. 10. 16.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0. 10. 23. 접수 제40090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70,080,030원과 미상환 채권보전비용 1,826,571원(= 1,857,120원 - 30,539원)의 합계인 371,906,601원(= 370,080,030원 + 1,826,571원)과 그 중 370,080,03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A, B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7.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는 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성립하여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제1항 기재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은 2020. 9. 22.경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A이 위와 같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 일자경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가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0. 4. 29. 체결된 것이다.

(2) A이 2020. 9. 22.경 연체한 것은 이자채무가 아니라 대출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발생한 대출금 원금채무의 연체이고, A이 대출기간 동안 E에 대한 대출금 이자채무를 연체하였다는 주장입증은 없다.

(3) E이 2020. 10. 15.경 작성한 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A의 대출금 연체에 관하여, ‘최근 사업부진 등 어려운 사유로 자금유통이 단절되었다. 수출실적 부족 및 상환자금 마련하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됨’, ‘단기적으로 사고발생사유가 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경영난 극복이 의문시되므로, 여신지원 측면에서 주의관찰이 요망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A이 언제부터 자금난과 실적 부진에 시달리게 된 것인지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4) 위 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 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주채무자인 A의 신용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0. 16.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A이 2020. 9. 22.경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2. 1. E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70,080,030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B의 채무초과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을가 제5, 6, 12 내지 18호증, 을나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1. 12. 3. 소유권을 취득한 용인시 처인구 G 중

1983분의 99 지분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D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 (2)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0. 19. 기준 감정평가액이 1,603,98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그로부터 얼마 전인 2020. 10. 1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550,000,000원2) 이 부당히 염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D은 B에게 2020. 10. 19.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잔금 1,550,000,000원에 관하여는 2020. 10. 23. B의 H은행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채무 1,041,312,41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B에게 308,687,581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 10. 27. B에게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4) B은 H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합계 508,687,581원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직후에 자신의 채권자인 I, C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550,000,000원은 대부분이 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그 처분 경위가 명확하고, 달리 B의 위 I, C 등에 대한 채무가 허위라거나 B이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B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들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 채무액에 비추어 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액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으로서의 변제가 급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B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피고 D의 악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에 대한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1년여 전부터 여러 곳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인터넷, 신문, 플래카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나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대금의 액수에 비하여 과도한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드러난 부분 외에 B의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인 1,603,980,000원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농지로서 실제로 1년 이상 매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부동산이 감정평가액과 동일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 그 이행 과정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하여 이례적이라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 D은 부친인 J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십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지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평택시 진위면 신리에 소재하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박상인, 판사 김태진

[별지]

목 록

- 1. 평택시 K 답 3001㎡
- 2. 평택시 L 답 895㎡
- 3. 평택시 M 답 1000㎡ (끝)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2) 감정평가액의 약 96.6%